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7. . . (제 359 회)	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 
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
 조례안

제출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출연월일	2017. . .

## 1. 의안명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2. 제안이유

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사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입법의 흠결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사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(안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)”을 “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<u>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</u> <u>의 선임과 교체선임</u>)① ~ ④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0조(<u>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</u> <u>의 선임 등</u>)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</p>